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557
----------	-------

발의연월일 : 2026. 9. 22.

발 의 자 : 김정호 · 허종식 · 박 정
이연희 · 허성무 · 이수진
김남희 · 임미애 · 김남준
박해철 · 안태준 · 정성호
윤후덕 · 서왕진 · 전진숙
전은수 의원(16인)

제안이유

최근 주요국들의 에너지안보 조치 강화로 인한 에너지 공급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면서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에너지 절약 등 에너지 수요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 에너지 수요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산업 전체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규율을 강화하고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에너지 수요 관리 규율을 강화하고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보유한 정보를 제3자가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한국형 그린버튼 구축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에너지 고효율과 저소비 경제로의 전환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에너지공급자에게 절감목표와 효율향상사업 이행계획의 수립·시행 의무를 부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에너지공급자의 절감 목표 미달성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 나. 사업주관자의 공공과 민간의 구분을 없애고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의무를 모두에게 부여하며, 협의규제와 에너지사용계획의 사후관리를 강화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 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효율관리기자재,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종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제18조, 제19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
- 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정보체계의 구축과 제3자에 대한 정보 제공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31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에너지공급자의 효율향상의무)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공급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효율향상의무공급자”라 한다)에게 에너지사용자의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을 통한 에너지 수요 절감목표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효율향상의무공급자가 절감하여야 하는 에너지의 목표량(이하 “절감목표”라 한다)은 전년도 에너지판매량의 100분의 2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효율향상의무공급자는 절감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에너지사용자의 에너지 이용 효율의 향상을 통하여 에너지 수요를 절감하는 사업(이하 “효율향상사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효율향상사업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수요관리투자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한다.

③ 효율향상의무공급자는 매년 효율향상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행계획과 이행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 및 이행결과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절감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제3항의 수요관리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 및 이행실적의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효율향상의무공급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효율향상의무공급자는 절감목표의 초과분이나 부족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의 절감목표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족분의 이월은 1회에 한한다.

⑦ 정부는 효율향상사업의 이행으로 효율향상의무공급자에게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9조의3(절감목표 미달성에 대한 과징금 부과)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절감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효율향상의무공급자에 대하여 절감목표의 부족분에 해당 연도 평균 에너지판매단가(에너지원별 판매금액을 판매량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

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의2제6항에 따라 절감목표 부족분을 다음 연도의 절감목표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 기한까지 그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거나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징수된 경우 해당 부족분에 대한 절감 의무는 소멸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균 에너지판매단가의 산정기준, 과징금의 부과기준, 산정방법, 징수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이산화탄소만을 말한다”를 “이산화탄소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을 “사업주관자는”으로, “사업주관자 중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공사업주관자”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하며, 공공사업주관자 외의 자(이하 “민간사업주관자”라 한다)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립할 능력이 있는

자”를 “수립할 수 있는 인적·물적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협의 및 의견청취의 절차”를 “협의”로 한다.

다만,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라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에는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내용 중 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온실가스(이산화탄소만을 말한다)의”를 “온실가스의”로, “공공사업주관자에게는”을 “사업주관자에게”로, “요청할 수 있고, 민간사업주관자에게는 에너지사용계획의 조정·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를 “요청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공공사업주관자가 조정·보완요청을 받은 경우에는”을 “이 경우 사업주관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주관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관한 협의를 완료되기 전에는 그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주관자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관한 협의를 완료되기 전에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의 설치 등에 관련되는 공사의 일시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중 “사업주관자가 에너지사용계획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요청받거나 권고받은 조치를 이행하는지를”을 “제10조제2항에 따

른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완료 이후 사업주관자가 에너지사용계획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조치를 이행하는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주관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의 이행 여부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증명자료와 함께 준공 완료 후 14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점검 또는 실태파악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보고서 및 증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에너지사용계획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관자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주관자가 제3항에 따라 정한 기간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 또는 시설공사의 일시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를 “일반적으로”로, “이하 같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이하 “효율관리기자재”라 한다)에 대하여”를 “이하 같다)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자재로서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할 기자재(이하 “효율관리기자재”라 한다) 종류와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하여 적용되

는”으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부의 전원과 연결만 되어 있고”를 “에너지사용기자재 중 외부의 전원과 연결만 되어 있고”로, “에너지사용기자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하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를 “제품으로서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으로 지정할 제품(이하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이라 한다)의 종류와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에 대하여 적용되는”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품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하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를 “제품 중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으로 지정할 제품(이하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이라 한다)의 종류와 해당 제품에 대하여 적용되는”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이하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라 한다)에 대하여”를 “에너지사용기자재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 중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기자재로서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로 지정할 기자재(이하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라 한다) 종류와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에 대하여 적용되는”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중전의 제5호) 중 “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신고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정보체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중전의 제5호) 중 “에너지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을 “에너지공급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전년도의 공정·제품별 에너지사용량 및 해당 연도의 공정·제품별 에너지사용 예정량

6. 에너지사용기자재 현황 및 배치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및 통계를 관리하기 위한 정보체계(이하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정보체계”라고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주기별·실시간 에너지 사용량

2.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3.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제32조제2항에 따라 받은 에너지진단의 결과

5.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

6. 「전기사업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정보체계에 포함된 정보를 해당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정보를 처리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동의 없이도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정보체계 이용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제7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8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공공사업주관자”를 “사업주관자”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11조제2항”을 “제11조제4항”으로 한다.

1의2. 제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율향상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의 개정규정

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절감목표부터 적용한다.

제3조(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등에 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협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에 관하여 민간사업주관자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정·보완의 권고를 받은 민간사업주관자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9조의2(에너지공급자의 효율향상의무)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공급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효율향상의무공급자”라 한다)에게 에너지사용자의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을 통한 에너지 수요 절감목표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효율향상의무공급자가 절감하여야 하는 에너지의 목표량(이하 “절감목표”라 한다)은 전전년도 에너지판매량의 100분의 2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② 효율향상의무공급자는 절감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에너지사용자의 에너지 이용 효율의 향상을 통하여 에너지 수요를 절감하는 사업(이하 “효율향상사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효율향상사업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수요관리투자계획에 포함하여 시</u>

행한다.

③ 효율향상의무공급자는 매년 효율향상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행계획과 이행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 및 이행결과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절감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 제3항의 수요관리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 및 이행실적의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

<신 설>

고 인정하는 경우 기후에너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효율향상의무공급자에게 필
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효율향상의무공급자는 절감
목표의 초과분이나 부족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다음 연도의 절감목표에 반
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
족분의 이월은 1회에 한한다.

⑦ 정부는 효율향상사업의 이
행으로 효율향상의무공급자에
게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9조의3(절감목표 미달성에 대
한 과징금 부과) ① 기후에너
지환경부장관은 절감목표를 달
성하지 못한 효율향상의무공급
자에 대하여 절감목표의 부족
분에 해당 연도 평균 에너지판
매단가(에너지원별 판매금액을
판매량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
다)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
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u>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의2제6항에 따라 절감목표 부족분을 다음 연도의 절감목표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 기한까지 그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u> <u>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거나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징수된 경우 해당 부족분에 대한 절감 의무는 소멸한다.</u> <u>④ 제1항에 따른 평균 에너지 판매단가의 산정기준, 과징금의 부과기준, 산정방법, 징수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u>
제10조(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제10조(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①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이하 “사업주관자”라 한다)는 그 사업의 실시와 시설의 설치로 에너지수급에 미칠 영향과 에너지소비로 인한 온실가스(이산화탄소만을 말한다)의 배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소요에너지의 공급계획 및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과 그 평가에 관한 계획(이하 “에너지사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의 설치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 1항에 따라 제출한 에너지사용 계획에 관하여 사업주관자 중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공사업주관자”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하며, 공공사업주관자 외의 자(이하 “민간사업주관자”라 한다)로부터 의

견을 들을 수 있다. <단서 신설>

③ (생략)

④ 사업주관자는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할 능력이 있는 자로 하여금 에너지사용계획의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내용, 협의 및 의견청취의 절차, 대행기관의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생략)

제11조(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사용계획을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에너지의 수급에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에너지이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이산화탄소만을 말한다)의 배출감소 노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사업주

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 것으로 본다.

③ (현행과 같음)

④ -----

-----수립할 수 있는
인적·물적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
-----.

⑤ -----

-----협의-----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등) ① -----

온실가스의-----

-----사업주관자

관자에게는 에너지사용계획의 조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민간사업주관자에게는 에너지사용계획의 조정·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공공사업주관자가 조정·보완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신 설>

② · ③ (생략)

제12조(에너지사용계획의 사후관)

에 게 -----
-----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관자는-----

-----.

② 사업주관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관한 협의가 완료되기 전에는 그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③ 기 후에 에너지 환경 부 장관 은 사
업 주 관 자 가 제 10 조 제 2 항 에 따
른 에 너 지 사 용 계 획 에 관 한 협
의 가 완 료 되 기 전 에 공 사 를 시
행 하 는 경 우 에 는 관 계 행 정 기
관 의 장 에 게 그 사 업 의 실 시
또 는 시 설 의 설 치 등 에 관 련 되
는 공 사 의 일 시 중 지 등 필 요
한 조 치 를 할 것 을 요 청 할 수
있 다.

④·⑤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12조(에너지사용계획의 사후관)

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주관자가 에너지사용계획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요청받거나 권고받은 조치를 이행하는지를 점검하거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리) ① -----
----제10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완료 이후 사업주관자가 에너지사용계획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조치를 이행하는지-----

·.

② 사업주관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의 이행 여부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증명자료와 함께 준공 완료 후 14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점검 또는 실태파악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보고서 및 증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에너지사용계획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관자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

제15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자재에 한정한다)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에너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나 그 구조 및 재질에 따라 열손실 방지 등으로 에너지절감에 기여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이하 “효율관리기자재”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에너지관련기자재 중

⑤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5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① -----
일반적으로

이하 같다) 중 에너지이용 합
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기자재로서 효율관리기
자재로 지정할 기자재(이하
“효율관리기자재”라 한다) 종류
와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하여
적용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의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치·이용되는 기자재 및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부품을 효율관리기자재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 6. (생략)

② ~ ⑤ (생략)

제18조(대기 전력저감대상제품의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외부의 전원과 연결만 되어 있고, 주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외부로부터 켜짐 신호를 기다리는 상태에서 소비되는 전력(이하 "대기전력"이라 한다)의 저감(低減)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에너지사용기자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하 "대기 전력저감대상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대기 전력저감대상제품의 지정) -----
에너지사용기자재 중 외부의
전원과 연결만 되어 있고, ---

제품
으로서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으로 지정할 제품(이하 "대기
전력저감대상제품"이라 한다)
의 종류와 대기전력저감대상제
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1. ~ 5. (생략)

제19조(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중 대기전력 저감을 통한 에너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제18조제2호의 대기전력저감기준에 적합할 것이 특히 요구되는 제품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하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 ⑤ (생략)

제22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에너지사용기자재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로서 기후에너지

-----.

1. ~ 5. (현행과 같음)

제19조(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 ① -----

---- 제품 중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으로 지정할 제품(이하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이라 한다)의 종류와 해당 제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① -----

-----에너지사용기자재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 중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기자재

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
(이하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
기자재”라 한다)에 대하여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
시하여야 한다. 다만, 에너지관
련기자재 중 「건축법」 제2조
제1항의 건축물에 고정되어 설
치·이용되는 기자재 및 「자
동차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부품을 고효율에너
지인증대상기자재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
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② ~ ⑧ (생략)

제31조(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
고 등) ① 에너지사용량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
상인 자(이하 “에너지다소비사
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로서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
자재로 지정할 기자재(이하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라 한다) 종류와 고효율에너지
인증대상기자재에 대하여 적용
되는-----
-----.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31조(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
고 등) ① -----

31일까지 그 에너지사용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신설>

<신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에너지관리자”라 한다)의 현황

② (생략)

<신설>

-----.

1. ~ 4. (현행과 같음)

5. 전년도의 공정·제품별 에너지사용량 및 해당 연도의 공정·제품별 에너지사용 예정량

6. 에너지사용기자재 현황 및 배치

7. -----제6호-----

② (현행과 같음)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및 통계를 관리하기 위한 정보체계(이하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정보체계”라고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주기별·실시간 에너지 사용량

2.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신고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공급한 에너지의 공급량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 4. (생략)

<신설>

<신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

<신설>

3.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제32조제2항에 따라 받은 에너지진단의 결과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정보체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

1. ~ 4. (현행과 같음)

5.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

6. 「전기사업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

7. -----
-----에너지공급기관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정보체계에 포함된 정보를 해당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신 설>

제7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생 략)

②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라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내용 중 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 것으로 본다.

제78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정보를 처리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동의 없이도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정보체계 이용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제7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제7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생 략) <u><신 설></u>	1. (현행과 같음) <u>1의2. 제9조의2제3항을 위반하</u> <u>여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하</u> <u>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u> <u>한 자</u>
2.·3. (생 략) ③ (생 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9호 및 제9호의2부터 제9호의6까지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2.·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1. ~ 3. (생 략) 4. 제11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 니한 <u>공공사업주관자</u>	1. ~ 3. (현행과 같음) 4. ----- ----- ----- -----<u>사업주관자</u>
5. <u>제11조제2항</u>에 따른 관련 자 료의 제출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사업주관자	5. <u>제11조제4항</u>----- ----- -----
6. ~ 12. (생 략) ⑤ (생 략)	6. ~ 12.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